

26. 建設工事監理代價基準中 改正

建設交通部 告示 第1996-20號 1996. 1. 15

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3호중 “별표3”을 “별표2”로 한다.

제5조 제3호중 “별표4”를 “별표3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중 “별표4”를 “별표3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노임단가) ①노임단가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·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 감리원의 급료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, 감리원의 등급별 감리용역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·공표한 노임단가로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은 특급감리원, 고급감리원, 중급감리원,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하며,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

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는 1일 8시간(토요일 4시간),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. 다만,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.

제11조 본문중 “별표3”을 “별표2”로 한다.

“〈별표2〉”를 삭제한다.

“〈별표3〉”을 “〈별표2〉”로 한다.

“〈별표4〉”를 “〈별표3〉”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중 이 고시 시행일 당시 당해 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2. (감리대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된 감리용역의 경우는 잔여감리기간동안 이 기준을 적용한다.